

## 강원도립대학교 방송국 운영 규정

(제정) 2013-07-01 규정 제325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명칭) 본 국은 강원도립대학교 방송국(이하 “방송국”)이라 칭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2조(위치) 본 국은 강원도립대학교 내에 둔다. <개정 2016.4.25>

제3조(목적) 방송국은 교내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여론형성 및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며 건설적이고 품격있는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제4조(업무) 본 국은 다음 사업을 한다.

1. 강원도립대학교 교내 방송 <개정 2016.4.25>
2. 기타 본 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구성) 본 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방송국장
2. 주간
3. 실무국장
4. 기술부장
5. 연출부장
6. 기획부장

제6조(임명) ① 주간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국장 및 부장은 방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며 주간이 임명한다

③ 부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부장의 추천으로 주간이 임명한다.

제7조(직무) ① 방송국장은 총장이 당연직이 되고 국을 대표한다.

② 주간은 본 국의 운영 및 방송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방송국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실무국장은 학생국원을 대표하며 각 부장들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각 부의 부장은 방송 전반의 업무를 각 부원에게 교육하고, 본인이 맡은 방송을 담당하며, 주간을 보좌한다.

⑤ 각 부의 부원은 방송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, 부장을 보좌한다.

제8조(임기)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자격상실) 방송국원은 졸업, 휴학, 징계 및 방송국 또는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 
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0조(퇴사) 방송국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주간이 퇴사를 명할 수  
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방송회의에 불참하였을 때.
2. 방송 및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 불성실한 경우
3. 방송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나 발언을 하였을 때

제11조(방송회의) ① 방송국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송회의를 운영  
할 수 있다.

② 방송회의는 주간, 실무국장,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하며, 주간이 의장이 된다.

제12조(방송) ① 방송활동은 방송회의를 거쳐 주간의 승인을 받은 운영계획서에 따라야 한다.

② 방송 송출은 방송회의를 거쳐 월 단위로 작성된 방송계획서에 따른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) ①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주간, 교학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종합정보관장을 포함하여  
8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4.25>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간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방송국 활동에 관한 사항

제14조(재정) 본 국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방송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외에 급량비를 편성할 수 있다.

부 칙(2013. 7. 1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